

부산직할시사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결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4. 5. 13 사하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1994. 5. 14

다. 상정일자 : 제33회 사하구의회(임시회)

제1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('94. 5. 23) 상정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기획감사실장 성종무)

가. 제안이유

-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의 회의 참석 범위를 안전의 내용에 따라 신축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심의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높이는 한편,
- 법령의 개폐 또는 행정여건의 변동으로 조례운용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 및 타위원의 기능과 유사, 중복되는 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의 회의 참석 범위를 안전의 내용에 따라 신축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조)
- 위원회의 결정사항 중 불필요한 사항 및 타위원의 기능과 유사, 중복되는 다음 조항을 삭제함(안 제3조)
 - 농지개혁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구농지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
 - 농지개량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
 - 농촌 공장 유치에 관한 사항
 - 중요한 복합민원 종합조정 심의
 - 중요한 불허민원 심의
- 지도방문 조정심의 위원회를 구정조정위원회에 흡수 통합운영하게 됨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사항 중 지도방문 조정심의 위원회의 기능을 신설함(안 제3조)

－ 하급기관에 대한 감사 및 지도방문에 관한 사항

- 당연직위원의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안전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정한 범위를 위원회의 재적위원으로 간주하는 의제조항 신설(안 제4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－ 하급기관에 대한 감사 및 지도방문에 관한 사항은 종전에 지도방문위원회를 폐지하고 구
정조정위원회에서 흡수 통합운영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일부 불합리한 사항과 타 위원회
기능과 유사 중복되는 현실정에 맞도록 하는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